## (16-018)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근린생활시설 붕괴사고

공사명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리모델링			
사고일시	2016년 07월 18일(월) 14:04분경		기상상태	맑음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사고 종류	붕괴	
구조물 손실	-	인적피해	인명피해 없음	
장비 손실	굴삭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

### 1 공사개요

o 공사종류: 공동주택

o 연면적: 375㎡

o 규모: 지하 0층/지상 3층

# ② 사고경위

#### 사고개요

o 해당 사고 건축물은 45년 경과('71년 사용승인)한 연화(조적) 구조 3층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후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위하여 1층에서 소형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이 붕괴 하여 굴삭기 기사가 매몰되었음.

#### ③ 사고원인

o 준공 후 45년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이미 다수의 균열이 진행된 상황이며, 굴삭기 작업 충격과 상재하중에 의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됨.

#### 재발방지 대책

- o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받는다.
- o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o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하여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사고현장 위치도



사고 사진

사고현장



사고 사진

사고현장



사고 사진

사고현장